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9월 24일 서천호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천호의원)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바,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 2. 4.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이후 같은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 지역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20. 5. 19. 제정, ’21. 5. 20.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 10. 24. 개정·시행) 등에도 청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

개정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청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최근 5년간 전체 농촌인구 대비 농촌청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층을 20대~40대로 상정하는 경우와, 20대~50대로 상정하는 경우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 농촌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24 예산 기준 1조 4,937억원), 동 사업들의 적용 대상인 청년 농업인은 대체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청년층이 급감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대상에 청년을 명확하게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의 경우 청년으로 인정되는 연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일반적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농업·농촌 정책의 정책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에 대하여 그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연령의 범위에 대하여는 농촌환경, 농촌인구구조 및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연령기준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 보다는 광범위하게 청년으로 규정하되, 농업·농촌 정책별 성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청년의 대상을 정하고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현행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추가하고 있는데, 해당 조는 ‘역량강화’ 및 ‘여가문화 정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청년 지원 정책으로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에는 협소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조문 또는 별도의 항으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사례를 참고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착지원, 귀농지원,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교육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농어촌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8. 기타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청소년”을 “청소년·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아동과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청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 · <u>청소년</u> 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u>아동과 청소년</u> 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 · <u>청소년 · 청년</u> 에 대한 지원) ---- ----- <u>아</u> <u>동 · 청소년 · 청년</u> ----- ----- ----- -----.